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267
----------	-----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3일

발 의 자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김성기,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최근 가파르게 줄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마련 필요에 따라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5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4. 8. ~ 4. 29.(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4. 3. 26.~ 4. 5. 의견 없음.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 및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일경험 지원)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은미의원
연락처	(033) 330 -2503